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10 선고 2024가단507162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택도시보증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

담당변호사 가영현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9.

판 결 선 고 2024. 7. 10.

주 문

1.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2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50,000,000원을,

나.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액 중 229,727,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

5.부터 2024. 3. 6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
돈을 각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이국현

별지